

# 1. 한국방송통신대학학칙

제정	1972. 3. 9	규칙	제 250 호
제 1 차개정	1973. 6.22	규칙	제 291 호
제 2 차개정	1974. 1. 1	규칙	제 297 호
제 3 차개정	1974.12. 3	규칙	제 314 호
제 4 차개정	1975.10.25	규칙	제 351 호
제 5 차개정	1977. 1.17	규칙	제 455 호
제 6 차개정	1977.12.29	규칙	제 474 호
제 7 차개정	1980. 3.31	규칙	제 523 호
제 8 차개정	1981. 4.27	규칙	제 495 호
제 9 차개정	1982. 2.19	규칙	제 30 호
제 10 차개정	1983. 1. 5	규칙	제 44 호
제 11 차개정	1983. 3.15	규칙	제 46 호
제 12 차개정	1984. 5.30	규칙	제 90 호
제 13 차개정	1985. 1.15	규칙	제 116 호
제 14 차개정	1985. 6.12	규칙	제 121 호
제 15 차개정	1985.10. 7	규칙	제 127 호
제 16 차개정	1987. 2. 7	규칙	제 151 호
제 17 차개정	1987. 5.29	규칙	제 159 호
제 18 차개정	1988. 6.21	규칙	제 173 호
제 19 차개정	1989.12.11	규칙	제 213 호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 목적 ) 본 대학은 방송과 통신등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고등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명칭 ) 본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( 이하 “ 대학 ” 이라 한다 ) 이라 한다.

제 3 조 ( 용어의 정의 ) 본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

같다.

1. 삭제

2. 삭제

3. 본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조교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원이라 하고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수라 한다.

제 4 조 ( 학과 의 설 치 ) 학과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 1 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본 대학 및 각 협력학교의 교육환경과 수용능력등 여건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 전임교원의 소속 ) 본 대학의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그 전공에 따라 1개학과에 소속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.

제 6 조 ( 학생의 소속 ) 본 대학의 학생은 본 대학의 1개학과에 한하여 학적을 가지며 출석수업은 본 대학 또는 협력학교에 출석하여 수강한다.

## 제 2 장 교 육 조 직

제 7 조 ( 설 치 학 과 ) ① 삭제

② 본 대학에 국어과, 영어과, 중국어과, 불어과, 일어과, 법학과, 행정학과, 경제학과, 경영학과, 무역학과, 농학과, 가정학과, 전자계산학과, 응용통계학과, 보건위생학과,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를 둔다.

③ 교양과목을 권장할 교양학과를 둔다.

제 8 조 ( 학과별 입학정원 ) 본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학	과	명	입	학	정	원
국	어	과	5,000	명		
영	어	과	4,000	명		
중	국	어	4,000	명		
불	어	과	2,500	명		
일	어	과	2,000	명		
법	학	과	5,000	명		
행	정	학	6,000	명		
경	제	학	3,000	명		
경	영	학	6,000	명		
무	역	학	2,000	명		
농	학	과	3,000	명		
가	정	학	4,000	명		
전	자	계	산	학	과	2,500 명
응	용	통	계	학	과	2,000 명
보	건	위	생	학	과	2,000 명
교		육		과		2,000 명
유	아	교	육	과		2,000 명
계						57,000 명

제 9 조 ( 학과장 ) ①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,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.

② 학과장은 소속 전임교원을 통솔하고 학과에 속한 학생의 교육과

지도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.

③학장은 학과장에게 소관사무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부 속 시 설

제 10 조 (부속시설) 본 대학에 방송통신교육연구소와 학생생활연구소, 도서관, 전자계산소, 지역학습관등의 부속시설을 둔다.

제 11 조 (부속시설의 기구조직) 제 10 조의 부속시설의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 제 4 장 관 리 조 직

제 12 조 (학장) 학장은 본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
제 13 조 (행정조직) 본 대학의 행정조직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다.

제 14 조 (교무위원회) ①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

②교무위원회는 학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과 교수회에서 선출한 5인의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
③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성립하고

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 기본운영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
3. 학과의 설치·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4. 부속시설 및 부속기관의 설치,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각종위원회의 설치,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교재편찬 및 교육매체에 관한 사항
7. 공개강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⑥위에서 정하지 않은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성안 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 15 조 ( 학과장회 ) ①본 대학의 학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장회를 둔다.

②학과장회는 학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방송통신교육연구소장 및 제 9 조의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장이 된다.

③학과장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각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
3.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4.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교육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

6.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④학과장회는 필요할 경우 소관사항을 교수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학과장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교 수 회

제 16 조 ( 목적 )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.

제 17 조 ( 구성 ) 교수회는 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하되, 의장은 학장이 된다.

제 18 조 ( 소집 ) 교수회는 의장인 학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학장은 교수회의 구성원의 1 / 4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 회의 )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0 조 ( 기능 )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
1. 학칙변경안에 관한 사항

2. 본 대학 주요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
3. 입학,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
4. 학생지도와 장학·포상·징계 및 후생에 관한 사항
5. 교무위원의 선출 및 인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6. 제 14 조 ( 교무위원회 ) 제 5 항 제 1 호, 제 3 호, 제 4 호, 제 5 호에  
대한 추인
7.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 제 6 장 운영위원회

제 21 조 ( 목적 )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운영위원회 ( 이하 “ 위원회 ” 라 한다 ) 를 둔다.

제 22 조 ( 구성 )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하여 15 인이내로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학장이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 23 조 ( 기능 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관계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
2. 대학육성방안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 24 조 ( 직무 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5 조 ( 회의 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6 조 ( 간사와 서기 ) ①위원회에 간사, 서기 각 1 인을 둔다.

②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제 27 조 ( 수당과 여비등 ) 본 대학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7 장 인 사 위 원 회

제 28 조 ( 목적 ) 본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.

제 29 조 ( 구성 )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과 학장이 지명하는 7 인이내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
제 30 조 ( 기능 )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그리고 승진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인사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1 조 (기타) 위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동 위원회에서 성안하여 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 8 장 기 타 위 원 회

제 32 조 (목적) 본 대학의 학사운영상 제반업무의 부문별 자문 및 교수회, 학과장회 소관사항의 사전심의를 위해 기획위원회등을 비롯한 기타위원회(이하 “각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 33 조 (구성) 각 위원회의 구성은 전임교수 및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7인이내로 하며 학장이 임명한다.

제 34 조 (소집) 각 위원회는 학장의 자문 또는 제 15 조 제 5 항에 따른 학과장회의 심의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교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각 위원회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속할 경우, 학장이 반드시 해당위원회를 소집 사전 심의토록 한다.

제 35 조 (기타)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위원회에서 성안하여 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 9 장 학년과 학기 및 출석수업 일수

제 36 조 (학년과 학기)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②학기는 다음과 같이 매학년 2학기로 한다.

제 1 학기 : 3 월 1 일 - 8 월 31 일

제 2 학기 : 9 월 1 일 - 익년 2 월 말 일

제 37 조 ( 출석수업 ) ①출석수업은 하기 및 동기 방학기간중에 실시한다.

다만,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기 및 동기 방학기간이 아닌 때에도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출석수업의 기간은 매학년 10 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 5 학년 과정과 학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각종 매체의 활용으로 출석수업을 갈음할 수 있다.

③출석수업은 본 대학, 협력학교 및 기타장소에서 실시하며 학생은 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석수업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10 장 입학과 등록

제 38 조 ( 입학시기 ) 입학시기는 매학년 초 30 일이내로 한다.

제 39 조 ( 입학자격 )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2.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3. 제 1 호에 준하는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 
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
4. 외국에서 12 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
제 40 조 ( 입학전형 ) 본 대학의 입학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기준은 학장이 따라 정한다.

제 41 조 ( 입학지원 구비서류와 전형료 ) ① 입학지원에는 지원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졸업증명서
2.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성적증명서, 다만 부득이하여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

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42 조 ( 등록 )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납입금을 불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③ 재학생은 매학기초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 43 조 ( 수강신청 ) ①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일단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학장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.

③ 수강신청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4 조 ( 편입학 ) ① 편입학은 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본 대학에서 구성하는 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현직교원 재교육을 위하여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편입학 학년은 편입학전에 수학한 대학(교)에서 교과목별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할 학과에 설정된 교과목별 학점 등에 관하여 제 1 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④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1 장 수업 및 재학연한, 교과과정, 학점 및 졸업

제 45 조 (수업 및 재학연한) ①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되,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.

다만, 4년이상을 재학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졸업학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할 수 있다.

②삭제

③전 항에 규정된 재학연한은 부득이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 46 조 (교과과정) ①본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.

②일반교양과목과 각 학과의 교과과정표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7 조 ( 교과과정의 편성 )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48 조 ( 방송강의 및 출석수업시간표 ) 방송강의 시간표는 매학기 개시전에 학장이 결정하여 공포하고, 출석수업 시간표는 각 협력학교장이 개강전에 정하여 공고한다.

제 49 조 ( 학점 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방송교육, 통신교재교육 및 출석수업을 종합하여 1 학기간 1 주 1 시간에 해당하는 이수를 1 학점으로 한다.

제 50 조 ( 이수학점 )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140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5 학점까지,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.

1.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
2.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<sup>+</sup> 이상일때
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

제 51 조 ( 학점별 학년구분 ) 학점에 의한 학년구분은 다음과 같다.

취 득 학 점	학 년 구 분
28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1 학 년
29 학점 이상 56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2 학 년
57 학점 이상 84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3 학 년
85 학점 이상 112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	4 학 년
113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때	5 학 년

제 52 조 ( 졸업 · 졸업증서 교부 및 학위수여 ) ①본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(1)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, 졸업학력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서식(2)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학 과	학 위	학 과	학 위
국 어 과	문 학 사	무 역 학 과	경 제 학 사
영 어 과	문 학 사	농 학 과	농 학 사
중 국 어 과	문 학 사	가 정 학 과	가 정 학 사
불 어 과	문 학 사	전 자 계 산 학 과	이 학 사
일 어 과	문 학 사	응 용 통 계 학 과	이 학 사
법 학 과	법 학 사	보 건 위 생 학 과	보 건 학 사
행 정 학 과	행 정 학 사	교 육 과	교 육 학 사
경 제 학 과	경 제 학 사	유 아 교 육 과	교 육 학 사
경 영 학 과	경 영 학 사		

② 삭제

③ 해당학과의 졸업학력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학칙 제 4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조기이수자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2 장 시험과 성적

제 53 조 ( 시험 ) 시험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.

제 54 조 ( 성적평가 ) ① 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성적, 출석수업을 통한 성적평가 및 과제물 평가성적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출석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필답고사성적과 과제물 평가성적을 종합한 성적으로 하거나, 필답고사성적과 학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필답고사는 원칙적으로 매학기의 출석수업중에 실시한다.

③ 과제물은 교과목별로 지정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매학기의 교과목별 출석수업에서 4분의 1 이상 결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
제 55 조 ( 등급의 평점 )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.

<u>등    급</u>	<u>평    점</u>
A <sup>+</sup>	4.3
A <sup>0</sup>	4.0
A <sup>-</sup>	3.7
<hr/>	<hr/>
B <sup>+</sup>	3.3
B <sup>0</sup>	3.0
B <sup>-</sup>	2.7
<hr/>	<hr/>
C <sup>+</sup>	2.3
C <sup>0</sup>	2.0
C <sup>-</sup>	1.7
<hr/>	<hr/>
D <sup>+</sup>	1.3
D <sup>0</sup>	1.0
D <sup>-</sup>	0.7
<hr/>	<hr/>
F	0.0

제 56 조 ( 성적사정 )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D<sup>-</sup>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유아교육과의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의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( 10 과목 ) 의 성적 평점평균은 각각 B<sup>-</sup> ( 2.7 ) 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 [ F 성적인 교과목에 한하며, 다만, 유아교육과는 C<sup>+</sup> ( 2.3 ) 이하 ] 을 재이수 할 때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## 제 13 장 휴학·복학 및 제적

제 57 조 ( 휴학 )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못하였을 때는 재학년한 내에서 휴학 처리한다.

제 58 조 ( 복학 ) 휴학처리된 자는 등록기간중에 등록함으로써 복학처리된다.

제 59 조 ( 제적 )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.

1. 재학년한이 경과된 자.
2.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
3. 정당한 사유의 제출없이 계속해서 4 개학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
4. 원에 의하여 자퇴한 자.

## 제 14 장 학 생 활 동

제 60 조 ( 학생회설치 )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역량의 배양 및 인격함양과 본 대학 교육이념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회 ( 이하 “ 학생회 ” 라 한다 ) 를 둔다.

제 61 조 ( 운영 및 활동원칙 ) 학생회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2 조 ( 회비 ) 본 대학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63 조 ( 학생지도 ) ① 학생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회 지도위원회를 두되,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②학생들의 씨클활동등은 학생회 산하단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학생회 산하단체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 64 조 ( 금지활동 ) 학생은 수업·연구 등 본 대학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 65 조 ( 기타 )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활동 및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 15 장 포상 및 징계

제 66 조 ( 포상 ) ①학생으로서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7 조 ( 징계 ) ①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수업기간 중에는 징계권의 일부를 각 협력학교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징계의 종류는 근신·정학·제명으로 구분하되,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본대학 또는 타대학(교)에서 학칙위반으로 제명 또는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.

## 제 16 장 납 입 금

제 68 조 ( 납입금 )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

③납입금은 결석·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제 69 조 ( 수업료 면제 )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 70 조 ( 실험실습비 ) 실험과 실습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.

제 71 조 ( 납입금의 반환 ) 이미 납입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7 장 장 학

제 72 조 ( 장학금 ) ①본 대학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8 장 위탁생 및 공개강좌

제 73 조 ( 위탁생 ) ①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소속장관이 문

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탁생으로 추천한 경우와, 문교부 산하교육기관 및 교육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중, 문교부장관이 추천하였을 때에는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위탁생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위탁생이 수학중 징계에 의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.

제 74 조 ( 공개강좌 ) ①본 대학에 교양 또는 직무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을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9 장 기 타

제 75 조 ( 시행세칙 )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 ( 1972.3.9 대학 1010-411 )

이 학칙은 197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 1973.6.22 학무 1010-197 )

이 개정학칙은 197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졸업사정에 있어 이 학칙개정 이전에 취득한 A, B, C, D는 그 실점에 따라 개정학칙의 등급과 평점을 참작하여 해당등급으로 사정한다.

부 칙 ( 1974.1.1 학무 1041.3-7240 )

이 개정학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74.12.3 학무 1010-1212 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 1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 1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 87-100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 ( 1975.10.25 대학 1010-1339 )

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77.1.17 학무 1010-62 )

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197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 13조의 규정은 1977학년도 입학자로 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 1977.12.29 학무 1010-1717 )

이 학칙은 197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80.3.31 방송 1070-12 )

- ① ( 시행일 ) 이 학칙은 1979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 경과조치 ) 제 3 조의 규정은 1979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 1981.4.27 방송 1070-96 )

- ① ( 시행일 ) 이 학칙은 198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 경과조치 ) 이 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하여 전문대학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, 재입학 할 수 있는 연한에 관하여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 ( 1982.2.19 사회 1070-110 )

- ① ( 시행일 ) 이 학칙은 198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 경과조치 ) 제 8 조에 규정한 학과별 입학 및 학년정원중 3 학년 편입학정원은 1982 학년도에 한하여 모집한다.

부 칙 ( 1983.1.5 청년 1070-2 )

- ① ( 시행일 ) 이 학칙은 198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 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) 1982 학년도 3 학년에 편입학자의 졸업기준학점은 제 40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 학점이상으로 한다.
- ③ ( 학과별 입학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) 학과별 입학정원중 중국어과 및 불어과는 1984 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한다.

④ ( 재학년한에 대한 경과조치 ) 1981 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 본 학칙의 적용을 받고, 1980 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88 년 2 월말일까지 재학할 수 있다.

#### 부 칙 ( 1983.3.15 청년 1070-88 )

이 학칙은 1983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 1984.5.30 청년 1070-225 )

① ( 시행일 ) 이 학칙은 1984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 51 조 제 3 호의 규정은 1985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② ( 경과조치 ) 이 학칙 시행당시 전산통계학과 재적학생은 전자계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.

③ ( 전문대학과정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) 이 학칙 시행당시 전문대학과정 ( 유아교육과 제외 ) 에 재적중인 자는 1985 학년도부터 본 대학 학사과정 해당학과, 해당학년에 편입학된 것으로 본다.

다만, 전문대학과정의 졸업을 원하는 자는 그 졸업을 인정하며, 1984 년 12 월말까지 별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) 전문대학과정 학생의 학사과정편입학에 따른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해당학과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 ( 1985.1.15 사회 25210-23 )

이 학칙은 198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85.6.12 사회 25210-311 )

이 학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 1985.10.7 사회 25210-496 )

이 학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51 조 제 3 호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87.2.7 제도 25210-34 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87.5.29 제도 25210-145 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88.6.21 제도 25210-152 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 1989.12.8 제도 25210-367 )

1. ( 시행일 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 초등교육과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) 이 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초등교육과 재적생은 1994년 3월 1일이후에는 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.
3. ( 전문과정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) ① 1989학년도 이전 전문

과정 ( 유아교육과 ) 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년한 ( 5 년 ) 의 범위 내  
에서 1994 년 2 월말까지 재학한다.

②수업년한, 이수학점, 학점별 학년구분, 성적사정, 졸업증서교부등은 이  
학칙 시행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( 별지서식 1 )

제 호

# 졸업증서

성명 :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생

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(    전공 ) 을 이수하고 학  
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장 (인)

.....

위는 교육법시행령 제 1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문 교 부 장 관 (인)

학위등록번호 : \_\_\_\_\_

( 별지서식 2 )

제 호

## 수 료 증 서

성명 :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생

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(    전공 ) 을 수료하였으므로  
이 증서를 수여함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장 ( 인 )

( 별지서식 3 )

제 호

## 졸업증서

성명 :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과에서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였기에  
본 증서를 수여함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장    ( 인 )